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2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참고사항 .....            | 1 |
| IV . 검토의견 .....             | 2 |
| 1.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0.

다. 회 부 일 : 2025. 10.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V. 검토의견

### 1.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 현행                           | 개정안                                                                    |
|------------------------------|------------------------------------------------------------------------|
| ○ 별표 1<br><삭 제><br><br><신 설> | ○ 별표 1<br>-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br>(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br><br>- 영유아특별회계법<br>(영유아특별회계) |

현행법 제4조<sup>1)</sup>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유아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

| 구 분 | 내 용                                                                                                                                                                                                                                                                                                                                             |
|-----|-------------------------------------------------------------------------------------------------------------------------------------------------------------------------------------------------------------------------------------------------------------------------------------------------------------------------------------------------|
| 법률명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
| 회계명 | 영유아특별회계                                                                                                                                                                                                                                                                                                                                         |
| 세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li> <li>- 위의 금액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 전입</li> </ul> </li> <li>◦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 제6조에 따른 차입금</li> <li>◦ 그 밖의 수입금</li> </ul> |
| 세 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li> <li>◦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li> <li>◦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li> <li>◦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li> </ul>                                                            |
| 관 리 | ◦ 교육부장관                                                                                                                                                                                                                                                                                                                                         |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만 3~5세의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 및 0~2세 영아보육 운영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출산율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기 양육부담 완화와 공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는 만 3~5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0~2세 영아보육은 복지부, 3~5세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재원 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집행 효율성도 낮은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영유아기 전 단계를 포괄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보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지원체계의 일원화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2025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 법률이 제정·시행<sup>2)</sup>되었으며,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026호)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sup>3)</sup>함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이 「국가재정법」상에 이미 반영<sup>4)</sup>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2) 법률 제21228호(2025. 12. 23. 제정, 2026. 1. 1. 시행)

3) 법률 제21211호(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

4) 「국가재정법」 별표 1 제24호에 「영유아특별회계법」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별표 1</p> <p><u>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u></p> <p><u>&lt;신 설&gt;</u></p> | <p>별표 1</p> <p><u>&lt;삭 제&gt;</u></p> <p><u>24. 「영유아특별회계법」</u></p> |

문의처

02)6788-5150